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제 1 조 (총칙)

1.1 목적

본 규정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 기관을 말한다.

제 2 조 (권한 및 구성)

2.1 권한

2.1.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2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비상근이사를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2.3 의장

2.3.1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에 따라 정한다.

제3조 (소집 및 운영)

3.1 이사회회의 구분

3.1.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3.1.2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3.2 이사회회의 소집

3.2.1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소집한다.

3.3 소집 절차

3.3.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2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3.3.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 3.3.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4 결의방법

3.4.1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3.4.2 이사회회의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4.3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5 결의사항

3.5.1 주주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3.5.1.1 주주총회의 소집

3.5.1.2 영업보고서의 승인

3.5.1.3 재무제표의 승인

- 3.5.1.4 정관의 변경
- 3.5.1.5 자본의 감소
- 3.5.1.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 3.5.1.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총자산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전략, 성장, 또는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및 타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3.5.1.8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3.5.1.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3.5.1.10 주식배당 결정
- 3.5.1.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3.5.1.12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3.5.1.13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3.5.2 경영에 관한 사항
 - 3.5.2.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5.2.2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 3.5.2.2.1 자기자본 4%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증설,
공장신설
 - 3.5.2.2.2 총자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 3.5.2.2.3 자기자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 3.5.2.2.4 그 밖에 회사의 전략, 성장, 또는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 3.5.2.3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5.2.3.1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천연고무 구매계약

3.5.2.3.2 연간 구매 규모가 회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독점 구매계약

3.5.2.3.3 자기자본의 0.5%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면제,
선급금지급, 금전대여 계약

3.5.2.3.4 연간 지급액 100 억원 이상인 계약

3.5.2.4 중요한 재산의 처분

3.5.2.4.1 총자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처분

3.5.2.4.2 자기자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처분

3.5.2.5 결손의 처분

3.5.2.6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의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3.5.2.7 사채의 발행

3.5.3 이사에 관한 사항

3.5.3.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3.5.3.2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사 및 임원 겸임

3.5.4 기타

3.5.4.1 중요한 소송(소가 기준 자기자본의 2% 이상)의 제기, 합의, 취하

3.5.4.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5.4.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6 보고사항

3.6.1 사업계획 및 분기, 반기 영업현황

3.6.2 관련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 사항. 단, 법령상 공시판단 기준이 매출액,
총자본, 총자산, 총부채의 5% 또는 2.5%가 적용되는 경우 각각 4% 또는
2%를 적용함

3.6.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7 위임

3.7.1 이사회는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결정, 집행할 수 있다.

3.7.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 임원에게 당해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3.8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감독책임 및 업무 사항

3.8.1 이사회는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3.8.2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3.8.2.1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중요 정책의 승인

3.8.2.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직구조에 대한 승인

3.8.2.3 회사 내 재무보고 및 자산보호와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

3.8.2.4 경영진이 재무제표 신뢰성 관련 위험을 평가,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지에 대한 확인

3.8.2.5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3.9 준법지원 및 통제와 관련한 업무 사항

3.9.1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의 제정·개정을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3.9.2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실효적으로 운용되도록 감독한다.

3.10 관계자의 출석 및 외부전문가의 조력 등

3.10.1 이사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10.2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11 의사록

3.11.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조 (특별결의)

4.1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4.1.1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4.1.1.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4.1.1.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4.1.2 이사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등 상법
제 398 조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

제 5 조 (위원회)

5.1 설치

5.1.1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2 구성

5.2.1 각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5.2.2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5.2.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5.2.4 전략운영위원회는 5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5.2.5 보상평가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5.2.6 ESG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5.3 위원장

5.3.1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5.3.2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4 위임

5.4.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5.4.1.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5.4.1.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4.1.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4.1.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5.5 소집 절차

5.5.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5.5.2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안을 기재하여 위원회를 소집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을 거절하거나 그 소집청구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5.3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5.5.4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5.5.3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6 이사에게 의 통지

5.6.1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5.7 결의방법

5.7.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5.7.2 위원회는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5.7.3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8 의사록

5.8.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5.9 연기, 속행의 결의

5.9.1 위원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5.10 전문가의 조력

5.10.1 각 위원회 및 위원은 회사경영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5.11 위원회 규정

5.11.1 이사회는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 (사무국)

6.1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소집 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2. 사무국의 업무에는 제 5 조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

제 7 조 (부 칙)

7.1 본 규정은 2003 년 7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7.2 본 규정은 2004 년 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7.3 본 규정은 2005 년 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7.4 본 규정은 2007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7.5 본 규정은 2010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7.6 본 규정은 2018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7.7 본 규정은 2018 년 7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7.8 본 규정은 2018 년 11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7.9 본 규정은 2021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7.10 본 규정은 2023 년 2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7.11 본 규정은 2025 년 5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